6. 공통적인 안전조치사항

- (1) 작업전 관리감독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해예방을 하여야 한다.
- (2)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(가)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
 - (나) 브레이크·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
 - (다)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
- (3)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다음의 비계 및 거푸집동바리 작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·위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(가)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
 - (나) 재료·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
 - (다)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
 - (라)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상태를 감시하는 일
- (4)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,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.
 - (가)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 유지
 - (나) 화재, 도난, 소음 등의 방지,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
 - (다)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,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
 - (라) 주변도로의 정비, 교통정리,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
 - (마) 공사 중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 전장구,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한다.
- (5) 안전모, 안전대등 근로자의 개인보호구를 점검하고 작업전에 보호구의 착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다음 작업 중에 착용여부 및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6) 전기기계·기구 사용 시 감전재해 방지를 위해 접지 및 누전차단기가 설